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근거 마련〉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7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우재준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4.
3. 회부연월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 제7항).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¹⁾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여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 ③ (생략)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④ ----- <u>제6호</u> ----- ----- ----- -----.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⑥ (생략)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⑦ ----- ----- ----- ----- ----- ----- ----- ----- ----- ----- -----.
	-----제6호-----

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⑧·⑨ (생략)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 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⑧·⑨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²⁾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제7항은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특히 제2호에서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 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 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하여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기준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제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기준3)>

구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제18조제7항제2호	폐업을 신고한 자	상환기준소득 > 근로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제18조제7항제3호	실직자 및 공무원 퇴직자	상환기준소득 >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제18조제7항제4호	육아휴직자	
제18조제7항 제2호 ~ 제4호	-	상환기준소득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제18조제7항제5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상환기준소득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현행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대상>

구분	사업 대상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대상	제18조제7항제1호	1. 대학생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 (제18조제7항 제2호부터 제5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0조의2

□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①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의 필요성을 보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4)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되어 해당 근로자가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액을 지급받게 됨.

또한, 이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⁵⁾ 및 동 법 시행규칙⁶⁾에 따라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실업의 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

재취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등의 지급대상도 되지 못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연체시의 불이익 관련 사항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제1항7)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음.

<최근 3개년 학자금대출 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2년	170	2,172	2,089	10,992	131	1,468	2,390	14,632
2023년	115	1,446	1,942	10,285	108	1,407	2,165	13,138
2024년	173	2,155	1,777	9,618	111	1,292	2,061	13,065

자료:교육부

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실제 2024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미납으로 인하여 총 111명이 강제집행을 당했으며, 173명이 가압류를 당하는 등 학자금 대출원

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 9.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0조(연체금)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리금 상환 미납으로 법적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6조의2제7항 단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역시 대통령령에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산업재해율은 0.67%로 이에 따른 산업재해율을 기준으로 추산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로 인한 소요 예산은 연간 약 8,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임.

<최근 5개년 산업재해율>

(단위 :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재해율	0.57	0.63	0.65	0.66	0.67
전년대비 증감율	-	10.5	3.2	1.5	1.5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 한편, 개정안은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상환유예 적용대상(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은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으

며, 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 상환유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참고로,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8)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 면제 대상에 안 제18조제7항6호를 포함하지 않았음.

<현행 대출원리금 이자면제 대상>

구분	사업 대상	
이자면제 대상	병역 복무자 (제16조의2 제1항)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제16조의2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의2 제3항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u>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u>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 하는 이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 ☐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교육부와 국세청은 업무상 산업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